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403호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안일자 : 2023년 10월 16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서울을 대표할 새로운 브랜드가 선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브랜드를 교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 브랜드를 |•SEOUL•U에서 M▼SOUL로 변경하여 신규 서울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2, 제3조 제2호 관련).
- 나. 서울브랜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브랜드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제4항).

다. 서울브랜드총괄관의 국내외 활동에 따른 여비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7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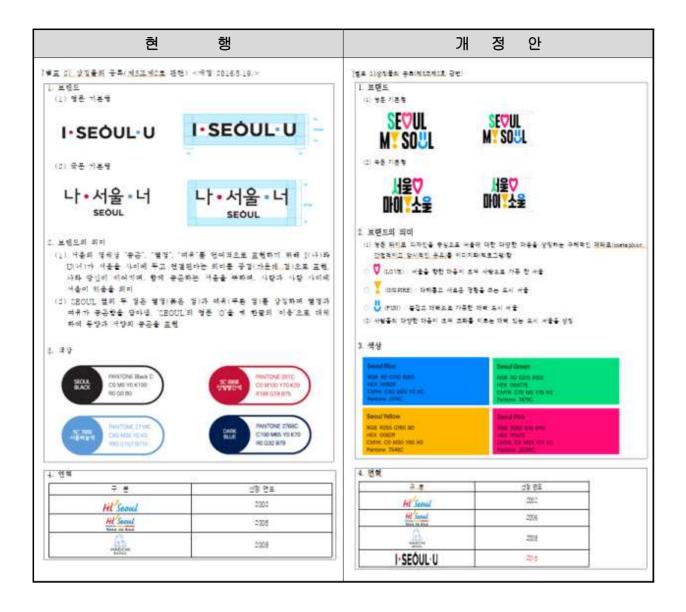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을 대표할 신규 브랜드가 선정됨에 따라(2023.8.16.) 신규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브랜드를 활용해 서울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브랜드의 변경(안 별표2, 제3조제2호 관련)

○ 개정안은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M∑SQUL"을 신규 브랜드로 규정하여 기존 브랜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시정 홍보물과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동 조례 제3조는 상징물의 종류로 휘장, 브랜드, 심벌, 꽃, 나무, 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휘장, 브랜드, 심벌 등은 별표로써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대표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반영하여 각각 변화되어 왔음.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 별표 2 3. 심벌 : 별표 3 4. 꽃 : 개나리 5. 나무 : 은행나무

6. 새 : 까치

○ 서울시는 "I·SEOUL·U" 가 도시브랜드의 필수 요소로서 의미 전달의 직관성이 부족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존 브랜드가 서울의 미래 방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신규 브랜드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음.

설문조사 질문	국내	해외
아이서울유(I·SEOUL·U)가 서울의 미래 방향을 반영하는가	부정적	! 답변
	41.6%	69.0%
	긍정적	¦ 답변
새로운 도시브랜드 제작 필요 여부	68.1%	73.0%

- ※ 설문조사 표본(서울시민 1,000명, 서울방문 외국인 200명, '22.6.)
- 이에 서울시는 "정체되어 있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의 매력을 홍보할 수 있는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목적으로 「서울 대표 신규 브랜드 개발계획」(도시브랜드담당관-23171, 2022.8.1.)을 수립하였음.
-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신규 대표브랜드 개발 관련 표본조사(국내 21백 만원/해외 53백만원)' 2건(수의계약)과 '서울 신규 대표브랜드 개발 용역 (135백만원)' 1건(입찰) 등 총 3건의 계약을 실시하였음.
- 이 중 '신규 대표브랜드 개발 관련 표본조사' 2건은 통합발주할 경우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규모임에도 국내조사와 해외조사를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실시하였고, 계약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각 업체의 대표자와 소재지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사실상 1개 업체가 2건의 용역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임.

< 서울 대표 신규 브랜드 개발 및 집행현황 >

추진일 정		
서 울 의 가 치 찾 기	온라인 참여 티저 캠페인(참여붐업 유도)	'22년 8월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22년 9월
	해외 리서치 전문업체 선정 및 표본조사	'22년 9월
	신규 브랜드 런칭 전문가 자문단 구성	'22년 8월말
서 울 의	브랜드 디자인 전문 용역업체 발주 및 선정	'22년 8월말~9월중
가치만들기	시민의견 분류 및 정교화	'22년 9월중
	1차 브랜드 디자인(안) 도출(3~5개)	'22년 10월말
	국내외 주요도시 표본조사	'22년 11월중
서 울 의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선호도 투표	'22년 11월중
가 치 결 정	최종 후보 선정(브랜드 전문가 자문단)	'22년 12월초
	서울 대표 신규브랜드 선정식 개최	'22년 12월중
서 울 의	디자인 정교화 및 배리에이션 작업	'23년 1~2월
가치알리기	서울 상징물 조례 개정	'23년 2월
	브랜드 확산대책 수립 및 시행	'23년 3월

□ 소요예산(안): 총 260백만원

○ 오프라인 조사부스 설치 및 운영: 10백만원○ 국내외 표본(설문)조사 실시: 70백만원○ 표본조사결과 정교화 및 브랜드 디자인(안) 도출: 150백만원○ 응용매뉴얼 및 변형디자인 개발: 30백만원

□ 실제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용역명	계약금액
1	서울 신규 대표브랜드 개발 용역 <i>(중도해지*)</i>	135,000
2	서울 신규 대표브랜드 개발 관련 표본조사(국내)	21,340
3	서울 신규 대표브랜드 개발 관련 표본조사(해외)	53,350
4	신규브랜드 세부 디자인 개발 용역	21,340
5	신규브랜드 슬로건 현장 선호도 조사 용역	21,340
6	신규브랜드 개발 선호도 조사 모바일 리서치 용역	51,728
7	신규브랜드 디자인 보완 용역	21,340
합계		325,438

^{* &#}x27;서울 신규 대표브랜드 개발 용역'의 실제 지출금액은 112,682천원이 발생하였음.

- 지난 3월 슬로건이 선정된 이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브랜드 디자인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이마저도 4개 디자인 후보에 대한 시민들의 혹평이 이어지자 조사 기간 연장과 시민공모를 사전 계획 없이 실시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음.
- 또한 서울시가 최종 선정・발표한 브랜드 디자인은 서울관광재단이 제작하여 관광 브랜드로 사용 중인 "M∑SOüL S₹♡UL"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해 1년 이상의 개발 기간, 3억원 이상의 예산,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력과 시민참여가 모두 매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다만 개발 과정 중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대표 브랜드는 향후 서울시의 얼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브랜드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당초 목적에 맞게 브랜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기존 공급자 중심의 홍보물 제작・배포 또는 단발성 행사를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브랜드 홍보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제4항)

개정안은 서울브랜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5년 연장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④ 위원회의 존속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④
기한은 <u>2024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그	<u>2029년 12월 31일</u>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브랜드위원회는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2014.10.16.~2016.5.10.)로 시작해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각종 브랜드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조정을 수행하고 있음.
- 제5기에 해당하는 현재 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에 발표된 신규 브랜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이며, 1년 임기(2023.7.26.~2024.7.25.)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

< 제5기 서울브랜드위원회 구성 개요 >

o 임 기: 위촉일로부터 1년 ('23, 7, ~ '24, 7.)

** 상징물 조례 개정('23.12월) 후 임기연장 (조례상 위원회 존속기한 : '24.12.31)

o 인 원: 총 16명 (당연직 2, 위촉직 14) ※ 남 9, 여 7명

- 당연직(2) : 홍보기획관, 디자인정책관

- 위촉직(14): 서울브랜드총괄관, 브랜드·마케팅·디자인 등 전문가

※ 위촉직 위원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특정성별 60% 초과금지 조건 및 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8조 청년(만39세이하) 추천비율 10% 준수 위촉

o 위 원 장 : 위원장 1(서울브랜드총괄관), 부위원장 1(위원 중 호선)

o 분과구성(안): 위촉위원 중복 참여 가능

브랜딩 분과(3) : ● 신규브랜드 및 정책브랜드 개발 및 확산 검토 및 자문

홍보분과(2) : • 시정 홍보 관련 검토 및 자문

콘텐츠분과(3) : ● 홍보 콘텐츠 제작방향 검토 및 자문

관광분과(3) : • 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 사업 검토 및 자문

이벤트 분과(2) : • 시민 참여 캠페인 및 이벤트 프로그램 검토 및 자문

 개정안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의 내용은 조례 간 체계 정당성의 원칙과 정합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한만료 6개월 전에 연장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서울브랜드담당관은 12월 6일이 돼서야 총괄부서인 조직담당관에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다음 날인 7일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음.
- 이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향후 서울시는 조례 제·개정 시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를 지양하고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를 사전 고려하여 입안·제출해야 할 것임.

(3) 서울브랜드총괄관 여비 규정 신설(안 제6조제7항)

 개정안은 민간전문가인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브랜드의 국내외 홍보와 민관 협력을 활성화 하고, 현행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사항 일부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신축성 있는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 ② 시장은	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u>있으며,</u>	있다.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브랜드	⑦
총괄관에게 <u>수당을</u> 정하여 지급할 수 <u>있으며,</u>	<u>수당 및 여비를</u>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있다.
<u> 규칙으로 정한다</u> .	

- 서울시는 "서울브랜드총괄관"에 관한 규정과 방침을 신설하여(2023.3.)
 임기 2년(2023.4.1.~2025.3.31.) 주 2일 근무를 원칙으로(비상근) 민간전문가 1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다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간 전문가의 자문료는 자문 건별로 지급하되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체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서 수당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기 전인 5월 이전까지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근거 없이 수당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남.

< 서울브랜드총괄관 수당 지급 기준 및 내역 >

ㅇ 지급 기준

- 근거:「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제6조(서울총괄관의 운영 등)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제18조(수당)
- 기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 자격기준(1급)에 상응하는 시간당 수당 지급
 - ※ 근무시간당 수당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개정 후 지급하고, 개정 전까지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거, 자문안건당 수당 지급

ㅇ 지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자문건수(건)	지급수당
계	69	27,282
4월	13	3,900
5월	16	4,800
6월	7	3,364
7월	8	3,828
8월	12	5,800
9월	5	2,262
10월	8	3,328

○ 운영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동 개정안에서 제안한 여비 지급 규정과 관련 하여「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는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 제30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바, 동 개정안은 예산 편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법기술적 명료함을 제고한다는 측면 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 <개정 2021. 5. 25.>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당자	지급 기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가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